

제 271 회 시 의 회 정 려 회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

2016. 11. 18.

서 울 특 별 시
(50플러스재단)

재단법인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

1. 개정이유

-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(공기업담당관-4799호, '16.4.29.)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임·직원의 보수(안 제16조)
 -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지침 반영
: 당연직 이사 지급 제한 문구 수정
- 당연직이사 운영제도 정비
 -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지침 반영
: 전 기관 이사회에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의 당연직이사 참여

3.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임원의 임면) ①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.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 ②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,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 ③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.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 ④ 감사는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	제8조(임원의 임면) ①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.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 ②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,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 ③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.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 2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④ 감사는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

현 행	개 정 안
하고, 1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.	하고, 1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.
제16조(임·직원의 보수) ①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. 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	제16조(임·직원의 보수) ①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. 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.</u>

4. 참고사항

- 제안근거 : (재)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관 제37조(정관의 변경)
- 추진절차 :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⇒ 이사회 의결 ⇒ 서울특별시장 승인 ⇒ 보건복지부 정관 변경 허가 ⇒ 시행

※ 붙임 :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관개정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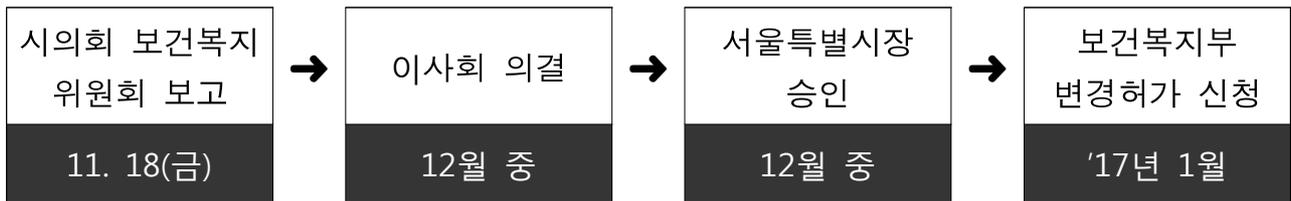
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관개정 추진경위

I. 추진근거 및 주요골자

1.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지침 반영

- 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(공기업담당관-4799호, '16.4.29)
- 추진목적
 - 당연직이사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 마련
 - 기관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포함)의 이사회 참석수당 현실화
 -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를 통한 시와 기관 간 소통 협력 증대
 -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총괄 관리·감독 기능 강화 및 '지방출자출연법' 등 관련 법령·지침의 적정 적용여부 검토 강화

II. 개정 절차 및 추진일정안



※ 추진절차 관련 법적 근거

1. 시의회 상임위 보고 :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(정관)
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2. 이사회 의결 → 시장 승인 → 보건복지부 허가 : 재단법인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관 제37조(정관의 변경)
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